## ●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5호

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(를)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3년 06월 13일

##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①

##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 중 "저작자·저작인접권자·데이터베이스제작자·상속인·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"를 "공동저작자·공동저작인접권자·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·공동상속인·공동등록권리자 또는 공동등록의무자가 있는 경우"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"경우에 한정한다"를 각각 "경우만 해당한다"로 한다.

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법 제55조제7항(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		
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등록부의	1,000원	면제
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		

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수수료(1건) 방문・우편: 1,000원 인 터 넷: 면 제

별지 제33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첨부서류

- 1. 등록사항의 변경·경정·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(이하 "변경등록등"이라합니다)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(변경등록등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
- 2.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대리인이 변경등록등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변경등록 등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·경정·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■ 저작권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

# [ ]저작물 [ ]실연 [ ]음반 [ ]방송 이용 승인신청명세서 [ ]데이터베이스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※ [ ]에는 애딩커는 듯에 \효율 합니다.		
① 일련번호		
② 제호(제목)		
③ 종류		
④ 형태 및 수량		
공표	⑤ 공표연월일	
	⑥ 공표국가	
	⑦ 공표방법	[ ] 출판 [ ] 복제·배포(판매) [ ] 인터넷 [ ] 공연 [ ] 전시 [ ] 방송 [ ] 기타 (
	⑧ 공표매체정보	
권리자	⑨ 성명(법인명)	
	⑩ 전화번호	
	⑪ 주소	
⑫ 저작물 등의 내용		

#### 작성요령

- 1.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저작물 등이 여러 건인 경우 저작물 등마다 개별로 작성하고 일련번호란(①)을 기재합니다.
- 2. 종류란(③)에는 어문저작물, 음악저작물, 연극저작물, 미술저작물, 건축저작물, 사진저작물, 영상저작물, 도형저작물,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, 2차적저작물, 편집저작물, 실연, 음반, 방송, 데이터베이스 중 해당되는 어느 하나를 기재합니다.
- 3. 공표매체정보란(®)에는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저작물 등을 공표한 매체(출판사, 배포 대상, 인터넷 주소, 공연 장소, 방송사, 프로그램명 등) 를 기재합니다.
- 4. 법 제50조에 따른 신청(법 제89조 및 제9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을 하는 경우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저작물 등의 권리자의 성명·전화번호 및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성명란(⑨), 전화번호란(⑩), 주소란(⑪)에 '알 수 없음'으로 기재합니다.
- 5. 저작물 등의 내용란(⑫)에는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저작물 등의 개요, 줄거리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.

## 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저작권 등록사항 변경·경정 등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별도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한 저작권 등록증을 첨부서류에서 제외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,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저작권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